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7월 2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25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7. 25(수)	담당부서	산업기술정책과
담당과장	김대자 과장(044-203-4510)	담 당 자	전성우 사무관(044-203-4504)

신성장분야 연구개발(R&D) 세액공제로 혁신성장 지원

- 제1차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0항에 따라 신성장분야 연구개발(R&D)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**"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" 제1차 회의를 7월 25일 개최**했다.

□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(R&D) 수행기업이 신청한 **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투자** 금액이 각각 ①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②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**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·결정**한다.

①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에 따른 **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**에 해당되는지 여부
⇒ 시행령 [별표 7]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(11개분야 157개 기술)

② 내국인의 투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**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**에 해당되는지 여부 ⇒ 시행규칙 [별표8의8] 관련

○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(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)을 포함해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하며,

* **당연직(4명)**: **산업부 산업정책실장(위원장)**,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,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,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
* **위촉직(9명)**: 기업의 세제혜택과 **이해관계가 없는 정부 출연연** 위주로 구성

○ 회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.

* 신청기업 및 신청내용은 기업 비공개 정보로 공개 불가

□ 실제 세액공제는 해당기업이 “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”의 인정 심의결과와 국세청의 양식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하게 된다.

○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(R&D) 세액공제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(20~40%)을 일반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율(0~25%)보다 우대 지원한다.

<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(2018년 현행 기준) >

구 분	일반 분야	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분야
연구개발비 (당기분)	대: 0～2% 중견: 8～15% 중소: 25%	대·중견: 20～30% 코스닥상장 중견: 25～40% 중소: 30～40%

□ 심의신청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을 통해 **상시 접수**하고 있으며, 사전조사*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**6개월 이내**에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**인정 여부를 결정**하여 통보한다.

* 사전조사 : 분야별 기술전문가와 회계사로 사전조사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

신청서 접수	▶	사전조사	▶	심의위원회 개최	▶	심의결과 통보
상시접수		서면/발표/현장평가		분기별 1회 (신청이 없으면 미개최)		기재부, 신청기업
신청기업		사무국(KIAT)		심의위원회		산업부

*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연락처 : 기술인증팀, ☎02-6009-3422

□ 산업부 관계자는 “그간 **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해당여부가 불확실**해 **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이 추징될 우려**가 있었으나, 사전조사 과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액공제에 대한 **불확실성을 해소**할 수 있게 되었다.”라며,

○ “향후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**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**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**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**와 **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**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전성우 사무관(☎ 044-203-450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